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1076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3조의3제3항”을 “법 제13조의3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기관·단체 및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2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16(포상금의 지급)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(이하 이 조에서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고자”라 한다)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,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23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제1호	60	80	1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환경표지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3호, 2020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 허위·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, 2차 위반 시 80만원,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9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1077호
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제13조의5로 하고,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